

## 광명시 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

제정	1981.	7.	1	조례 제 8호
개정	1982.	4.	26	조례 제 132호
	1984.	2.	21	조례 제 249호
	1988.	5.	3	조례 제 468호
	1991.	1.	5	조례 제 628호
	1992.	10.	9	조례 제 730호
	1995.	11.	11	조례 제 903호
	1997.	1.	15	조례 제 986호
	2008.	6.	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1.	4.	15	조례 제1766호(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	2013.	8.	1	조례 제1936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8.	7.	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2.	3.	2	조례 제2840호(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조례·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(이하 “조례·규칙등”이라 한다)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문) 조례·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.

제3조(조례) ①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<개정 97. 1. 15>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광명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<개정 97. 1. 15, 2008. 6. 16, 2011. 4. 15, 2022. 3. 2>

제4조(규칙)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입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다만,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3. 8. 1, 2018. 7. 31>

제5조(예산등) 예산(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한다)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. <개정 97. 1. 15>

제6조(번호)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.

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·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.

③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「광명시의회 회의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,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97. 1. 15, 2008. 6. 16>

제7조(공포방법등) 조례·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 <개정 95. 11. 11, 2008. 6. 16, 2022. 3. 2>

제7조의2(시행일) 조례·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제8조(공포일등) 조례·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.

제8조의2(주민의 권익보호)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·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2. 4. 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4. 2. 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8. 5. 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1. 1. 5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) 제3조 및 제5조의 “지방의회의 의결”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“도지사의 승인”으로 한다.

부칙 <1992. 10. 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5. 11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97. 1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4. 15 조례 제1766호,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 
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8. 1 조례 제1936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2. 3. 2 조례 제2840호, 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항 정비를  
위한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27개 조례 일부  
개정을 위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